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0. . .

의결 사항

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발의연월일	2020. 05 . 15 .
발 의 자	홍난이의원 외 5명

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20. 05 . 15 .

발 의 자 : 흥남이 의원(외5명)

이지연, 송용자, 안장환, 김¹24우, 이선우

1. 제안이유

구미시의회 김태근의원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9명 (위원장 1, 부위원장 1, 위원 7)

나.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심사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87조(징계의 요구)

나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다.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(구성)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87조(징계의 요구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